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5~5p 번호 : 02	해설	② (x), ① (o) 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사회규범이다. ③ (o)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지만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④ (o) 상황에 따라 법질서유지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우위에 놓아야 할 때도 있고(예컨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법률의 경우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다), 정의를 우위에 놓아야 할 경우도 있다(독재자의 영구집권헌법 등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② (o), ① (x) 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사회규범이다. ③ (x)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지만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④ (x) 상황에 따라 법질서유지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우위에 놓아야 할 때도 있고(예컨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법률의 경우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다), 정의를 우위에 놓아야 할 경우도 있다(독재자의 영구집권헌법 등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론편 140~140p 2. 책임능력 ② ①	개념,공식-설명	㉠ <u>심신미약자</u>(형법 제10조 제2항)의 행위는 <u>벌하지 아니한다</u>.	㉠ <u>심신미약자</u>(형법 제10조 제2항)의 행위는 <u>형을 감경할 수 있다</u>.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이론편 236~236p	개념, 공식-설명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6호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목)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호)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 ※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10.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10.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1.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10.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5.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10.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10.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5.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호의4) <개정 2024.12.3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가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나목)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다목)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라목)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마목)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호)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 ※ [2024.12.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11.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